

서울중앙지방법원

제 3 2 민 사 부

결 정

사 건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

대표당사자가 1. 양일남

되 기 위 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29-3 래미안장안2차아파트 215동 1502호

소 제 기 자 2. 최영미

김포시 장기동 1624 고창마을 신영지웰아파트 104동 901호

소제기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

담당변호사 김주영, 변환봉

주 문

이 사건에 관하여 양일남, 최영미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.

이 유

양일남, 최영미는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들이므로,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1. 2. 10.

재판장 판사 서 창 원

 판사 박 중 환

 판사 신 정 민